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곽상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98 발의연월일: 2021. 1. 27.

발 의 자: 곽상도ㆍ김 웅ㆍ김정재

강기윤 • 박대수 • 권영세

박성중 · 김영식 · 엄태영

이 용 · 신원식 · 김기현

태영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입시서류에 허위·조작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·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합격해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.

그런데 현행법 제5조에서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·치의학·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·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음.

이에 대학·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

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소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등).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1호의"를 "제1호·제7호의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"못한다"를 "못하고, 제1항제7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"로 한다.

7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 시험에 합격한 경우

법률 제1778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1호의"를 "제1호·제8호의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"못한다"를 "못하고, 제1 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"로 한다.

8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 시험에 합격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1778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6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 한다.

제2조(면허 취소에 대한 적용례) 제65조제1항제7호 및 법률 제1778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6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(면허 취소와 재교부) ①	제65조(면허 취소와 재교부) ① -
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	
수 있다. 다만, <u>제1호의</u> 경우에	<u>제1호·제7호의</u> -
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	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
	의 규정에 따른 의료인 면허
	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
	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
	<u>경우</u>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	②
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	
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	
거나 개전(改悛)의 정이 뚜렷하	
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	
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3호	
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	
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, 제	
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	

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 년 이내, 제1항제4호·제6호 또 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 부하지 못한다.

법률 제1778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

제65조(면허 취소와 재교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

못하고, 제1항제7호에 따라
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
할 수 없다.
법률 제17787호 의료법
일부개정법률
제65조(면허 취소와 재교부) ① -
제1호·제8호의-
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
의 규정에 따른 의료인 면허
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
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
경우
②

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 거나 개전(改悛)의 정이 뚜렷하 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3호 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, 제 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 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 년 이내, 제1항제4호·제6호 또 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 부하지 <u>못한다</u>.

못하고, 제1항제8호에 따라
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
<u>할</u> 수 없다.